

안전보건 노·사 협의체 회의

[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, 제75조]

2022년 12월

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EPC 건설공사



<p>■ 법적기준 심의,의결 항목</p>	
내 용	비 고
<p>1.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</p> <p>1)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2) 제25조 및 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3)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,보건교육에 관한 사항</p> <p>4)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</p> <p>5)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7)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</p> <p>6)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3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,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,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,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5.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협의</p>	
<p>■ 심의·의결사항, 안전계획 등 협의내용</p>	
<p>1. 노·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</p> <p>1) 구성 : 2022.12.0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노사협의체로 통합 운영기로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·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 사용자 대표를 비롯하여 사용자위원, 근로자 위원 동수로 구성 - 사용자 대표 : 안영준 근로자대표 : 조부상 - 안전관리자 : 조현욱 보건관리자 : 박영은 - 사용자위원 : 구상민 - 근로자위원 : 김경식, 진창극, 이강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용자대표(위원장)은 노사협의체 위원 8명참석중 7명 찬성에 따라 (주)한양 안영준로 호선했.(본인 제외) ▶ 사용자위원 중 구상민은 한미기초 대표이사의 위임으로 선임함. ▶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전체 동의로 구성함. <p>2)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의거 2개월에 1회 실시(필요시 수시) <p>2. 노·사 합동안전점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규상 2개월 1회 (안전점검의날과 병행 가능) 	

■ 심의·의결사항, 안전계획 등 협의내용

3. 심의,의결,협의내용 및 기타 사항

- ▶ 노사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(근로자대표,근로자위원 등) : 구성 완료함. 변경사항 발생 시 재 구성함.
- ▶ 작업시간 : 07:00~17:00 (추추 조정 가능)
- ▶ 현장 내 위험, 비상상황 발생 시 원도급사 (주)한양에 선 보고 후 협력사 관리감독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유선 보고하고 재난대비 체계에 따라 업무 시행
[비상상황 발생 흐름도 : 최초발견자 - 협력사소장 - 원청사 관리감독자 - 원청사 안전관리자 - 안전보건총괄책임자 - 본사 및 해당관서 통보]

▶ 동절기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

1. 화기작업(용접,용단 등) 시 조치사항

- 작업구간 5미터 이내 소화기, 방화수 비치 및 화기감시자 배치

찬성 : 8명
반대 : 0명

2. 가설사무실 전열기구 사용 등

- 1) 가설사무실 내 전열기구는 온풍형 전열기구만 사용하고 코일형 전열기구 사용금지
- 2) 화재감시창 상시 개방상태 유지
- 3) 퇴근 시 전열기구 등 전원 off 상태 확인

▶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

- 안전모는 턱끈까지 체결토록 함.
-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후 안전고리 체결토록 함

찬성 : 8명
반대 : 0명

▶ 동다짐 작업 및 장비이동에 관한 사항

- 동다짐 작업 및 장비이동시 신호수 배치토록 함
- 동다짐 작업 시 슈퍼콘 설치하여 작업구획 설정토록 함
- 동다짐 작업 시 귀마개 착용 후 작업토록 함

찬성 : 8명
반대 : 0명

■ 심의 · 의결사항, 안전계획 등 협의내용

▶ 한파특보(주의보,경보) 발령시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
2 체감온도

• 외부에 있는 사람이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운 정도를 나타낸 지수를 말하며, 기온과 풍속의 조합에 따라 산출되는 지수이므로 단순 기온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• 체감온도 산출표

■ 관심 ■ 주의 ■ 경고 ■ 위험

기온 (℃)	0	-2	-4	-6	-8	-10	-12	-14	-16	-18	-20
풍속 (m/sec)											
1.4	-1.6	-3.9	-6.1	-8.4	-10.7	-13.0	-15.2	-17.5	-19.8	-22.0	-24.3
2.8	-3.3	-5.7	-8.1	-10.5	-12.9	-15.3	-17.7	-20.1	-22.5	-24.9	-27.2
4.2	-4.4	-6.9	-9.4	-11.8	-14.3	-16.8	-19.2	-21.7	-24.2	-26.6	-29.1
5.6	-5.3	-7.8	-10.3	-12.8	-15.4	-17.9	-20.4	-22.9	-25.5	-28.0	-30.5
6.9	-5.9	-8.5	-11.0	-13.6	-16.2	-18.7	-21.3	-23.9	-26.4	-29.0	-31.6
8.3	-6.5	-9.1	-11.7	-14.3	-16.9	-19.5	-22.1	-24.7	-27.3	-29.9	-32.5
9.7	-7.0	-9.6	-12.2	-14.9	-17.5	-20.2	-22.8	-25.5	-28.1	-30.7	-33.4
11.1	-7.4	-10.1	-12.7	-15.4	-18.1	-20.8	-23.4	-26.1	-28.8	-31.5	-34.1
12.5	-7.8	-10.5	-13.2	-15.9	-18.6	-21.3	-24.0	-26.7	-29.4	-32.1	-34.8
13.9	-8.1	-10.9	-13.6	-16.3	-19.0	-21.8	-24.5	-27.2	-30.0	-32.7	-35.4
15.3	-8.5	-11.2	-14.0	-16.7	-19.5	-22.2	-25.0	-27.7	-30.5	-33.2	-36.0
16.7	-8.8	-11.5	-14.3	-17.1	-19.9	-22.6	-25.4	-28.2	-30.9	-33.7	-36.5

찬성 : 8명
반대 : 0명

- 한파 주의보, 경보 발령시 각 공종 팀별 휴게시간 추가부여 (1시간당 15분 휴식)
- 아침시간 증작업 지양, 철 제품 취급 최소화

▶ 한파특보 발령시 핫팩 지급에 관한 사항

- 한파특보 이내 기온에서도 아침 기온 -2℃ 이상일 경우 아침 조회 시 또는 현장 출입구에 비치 후 지급

찬성 : 8명
반대 : 0명

▶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발생 시 수시 협의.